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14호 2017. 8. 17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7-14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14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7 - 142호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.

- 아 래 -

지구명	위 치	해 제 내 용			해제사유	비 고 (지정일자)
		유 형	등 급	면적(m ²)		
노산공원 지 구	사천시 서금동 101-24, 107-8, 107-3, 107-7, 101-18번지일원	붕괴위 험	나	6,729	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	최초:2009.01.15 변경:2015.08.20

붙 임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(따로붙임)

2017년 8월 17일

사 천 시 장

